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67(본소), 2019나174(반소) 판결

[임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67(본소), 2019나174(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소308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윤, 공익법무관 윤형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5. 14.

판결 선고 2020. 8. 1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소3080(본소), 2018가소11057(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850,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8.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후 피고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합계 1,493만 원의 임금(2016. 4.부터 7.까지의 매월 350만 원의 임금 및 2016. 8. 1.부터 2016. 8. 8.까지의 임금 93만 원) 중 피고로부터 784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0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9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인 64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의정부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D 또는 D의 대표자인 E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F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다시 D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미지급 임금 64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주장

-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D을 운영하는 E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 2) 원고는 앞서 살펴 본 1,493만 원의 임금 중 피고로부터 2016. 6. 3.부터 2016. 7. 9.까지 합계 984만 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비 9,442,800원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6. 9. 8.부터 2016. 10. 28.까지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940,720원을 지급받았다.
- 4) 결국 원고는 임금 명목으로 합계 17,780,720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984만 원 + F 주식회사로부터 직불받은 7,940,720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임금 총액 1,493만 원보다 2,850,720원(= 17,780,720원 - 1,493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2,850,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12.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중 9,442,8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6. 3. 410만 원, 2016. 6. 13. 374만 원, 2016. 7. 9.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2.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2016. 4. 1.부터

2016. 8. 8.까지 임금 합계 943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원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D에 고용된 것이라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진정 제기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진술을 한 사람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 아닌 E이다(위 진술서에서 E은 피고의 실경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E은 D 대표자로서 피고의 직원이기도 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싶다는 H에게 D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③ H은 이후 D의 이름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나.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4. 1.부터 2016. 8. 8.까지 D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F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다시 D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준 사실,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이 합계 1,493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금 중 합계 784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 709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64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0만 원 외에 200만 원도 추가로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3. 원고에게 41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41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200만 원은 E의 지시에 따라 I에

대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I의 처인 J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4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J에게 바로 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1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210만 원 외에 200만 원 또한 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200만 원은 E의 지시로 I에 대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F 주식회사에 대하여 9,442,8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뒤로 원고가 F로부터 합계 7,940,720원의 임금을 직불받았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6. 8. 12.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중 9,442,8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8. 1,588,090원, 2016. 9. 13. 300만 원, 2016. 10. 27. 3,352,630원, 합계 7,940,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6. 11. 15.까지 F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직접 근무하였고,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이에 대한 임금일 뿐,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과는 무관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이 원고가 2016. 4. 1.부터 2016. 8. 8.까지 D에 고용되어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은 원고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수령한 임금이라고 봄이 옳다.

① 위 직불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9,442,800원)과 이후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7,940,720원)가 서로 상이하고, 위 직불동의서에는 2016. 9. 12.까지 그 지급을 요청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 기한 내에 F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6. 9. 8.자

1,588,090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제출한 F 주식회사 명의의 2016. 8. 4.부터 2016. 10. 27.까지의 거래명세서에 '총무님: K'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2016. 12. 9. 피고를 진정하면서 진정서(갑 제3호증)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위 거래명세서의 상대방인 L의 대표자 M도 원고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E은 2016. 12. 28. 위 진정사건에 대한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전화진술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합계 643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당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E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 709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6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8. 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84만 원 외에 추가로 9,940,720원(= 피고가 지급한 200만 원 + F 주식회사가 지급한 7,940,720원)을 원고가 2016. 4. 1.부터 2016. 8. 8.까지 D에 고용되어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초과지급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문성

판사김혜선

판사박세황